

의안번호	2208802
의 퇴 인	김태선 의원
회 답 일	2025.5.21.
추계번호	25B1453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8조의3 (난임치료휴가)	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검사,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(이하 “난임치료휴가”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에 <u>연간 6일(난임검사의 경우에는 1일)</u>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함. 다만,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(제1항)	의무·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8조의3(난임치료휴가)	×	•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본문 참조

2. 상세 사유

- 현행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¹⁾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(이하 “난임치료휴가”)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함

1) 제18조의3(난임치료휴가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(이하 “난임치료휴가”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- 또한, 「고용보험법」 제76조²⁾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
-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를 위한 기간과 해당 시술 직후의 안정기·휴식기가 포함됨
 - － 다만,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외에도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난임치료의 일종(배란유도를 위한 병원방문, 자궁 내 유착박리 등 난임치료를 위한 수술 등)으로 보고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³⁾
-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사유에 연간 1일의 난임검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난임검사를 사유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경우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이 증가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난임검사로 인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근로자의 수를 추계하여야 하나,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난임검사를 받을 근로자의 규모와 이들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의사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2) 제76조(지급 기간 등)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「근로기준법」의 통상임금(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

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. 다만,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.

3) 자료: 고용노동부, 「모성보호와 일·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」, 2025.4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